5. 所得稅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802號 1992. 12. 31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호중 "휴양급여"를 "휴업급여"로 한다.

제14조 제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제16조 제1항중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에 의하여"로 한다.

제25조 제2항중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을 "신고를 받거나 제235의2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변경통보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으로, "신고받은 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은 사실"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제235조의2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9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제58조 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지하상가임대업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의 적수－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하도건설비 상당액의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

2. 제1호의 임대업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의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

제65조의2 제1항제2호중 "용광로 및 열풍로"를 "고로 및 열풍로, 비철제련용의 용해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 1, 선철제조용 고로와 비철제련용 용해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72조 제1항중 "제147조제5항"을 "제1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73조 제1항중 "제147조제5항"을 "제1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92조 제1항제1호중 "광업 또는 제조업"을 "광업·제조업·부가통신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의제매입세액등의 공제)"로 하고, 동조본문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100조 제1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에 제22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2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24.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방

지사업비용부담금

2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제106조 제3항중 "제37조제3호 및 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숙박업"을 "숙박업(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8호 제2항중 "양도"를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16호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법 제61조의3제1항"을 "법 제61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④법 제61조의3제2항제1호에서 "공제대상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 함은 다음의 의료비를 말한다.

1.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3.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처치 및 보장구 장착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4.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제1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6(맞벌이부부특별공제) 법 제61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제137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42조 제1항제2호중 "소득표준율"을 "표준소득률"로 한다.

제145조 제1항중 "당해 산출세액에 기한내에 자진납부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그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제147조 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8.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

제159조 제5항중 "소득표준율심의회"를 "소득표준심의회"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65조 내지 제169조"를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로 "제169조제2항"을

"법 제120조"로 한다.

16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정상적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정부가 결정(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을 포함한다)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의 차액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자일 것
2. 업종별 평균소득률, 신고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규모에 해당되는 자일 것

③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신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1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당해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이 사업규모·업종·지역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비율이상인 경우
2. 신고의 성실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164조 제5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확정신고결정기준율"을 각각 "확정신고결정기준"으로, "차등율"을 각각 "차등기준"으로 한다.

국세청장은 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또는 기준(이하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6조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이하 "서면조사결정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당해 연도의 부동산소득금액 또

는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이 사업규모·업종·지역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비율이상인 경우

2. 신고의 성실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⑤제164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제1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8조의2(보정요구) ①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보정요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보정할 사항
3. 보정을 요구하는 사유
4. 보정할 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보정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법 제119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6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은 제1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제169조의2의 제목 "(소득표준율의 결정)"을 "(추계방법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소득표준율"을 "표준소득률"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2.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
3.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률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기장된 부분등의 활용에 의한 방법

4.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이하 "기본율"이라 한다)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률을 말한다.

④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개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전까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70조 제8항중 "제111조 각호"를 "제111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175조의 제목 "(소득표준율심의회의 구성)"을 "(소득표준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소득표준율심의회"를 "소득표준심의회"로 한다.

제176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4조제5항에 규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기준
2. 제167조제1항에 규정된 서면조사결정기준의 제정·개폐 및 적용방법
3. 제1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
4. 기타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5조 제9항제6호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6호"로 하여 이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193조 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4호 내지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제3호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24.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기술개발금융채권
25.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발행하는 고속철도건설채권
26.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한국공항공단이 발행하는 공항채권

제19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144조제1항제2호(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으로서 그 주식이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외에서 거래되는 법인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97조 제1항중 "보험료공제"를 "보험료공제(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험료의 공제에 한한다)·맞벌이부부특별공제"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녀자세대주공제금액과 공제대상보험료"를 "맞벌이부부특별공제액·부녀자세대주공제금액·공제대상보험료"로 한다.

제221조 제1항중 "법 제184조제3항제1호 단서 및 동조제4항제1호 단서"를 "법 제184조제3항 단서 및 동조제4항단서"로 한다.

제222조 제1항중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4조 제1항중 "동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를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8조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를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5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매입세액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과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5조제9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라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분리과세되는 채권이자에 대한 적용례) 제193조제4항제10호·제24호 내지 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근로소득공제의 확대와 세율체계의 조정으로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기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1992. 12. 8, 법률 제4520호)됨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결과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중 하나의 주택을 세대를 합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15조).

나.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업종에 부가통신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추가하여 통신 및 정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영 제92조).

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100조).

라.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채권의 범위에 기술개발금융채권·고속철도건설채권·공항채권 및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기술개발·고속철도건설·신공항건설 및 주택건설을 지원함(영 제193조).

마. 납세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현재는 사업장관할세무서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만 신고

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계산서제출 횟수를 현재의 연4회에서 연1회로 축소하는등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함(영 제25조 및 영 제228조).

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각종 소득공제금액과 세율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간이세액표를 개정함(별표 2).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 2백만호 너와나의 보금자리